

조선전기 일본인의 向化와 정착*

한 문 중**

국문초록

조선초기 향화왜인의 발생배경은 조선의 왜구대책과 토지나 식량의 부족으로 인한 생활고 때문이었다. 특히 조선초기의 향화왜인은 왜구로서 투항한 降倭가 많았다. 그 후 향화왜인은 拘留倭인과 포로, 생활고 때문에 향화한 자, 대마도주의 使送倭人, 송환된 피로인을 따라 온 자, 倭僧, 삼포에 거주하는 恒居倭人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갔다. 그러나 1444년부터 일본에 거주하는 왜인에게도 관직을 제수함에 따라 향화왜인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조선에서는 향화왜인이 집단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변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의 산간지방에 分置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였다. 또한 향화왜인의 外方 출입을 금지하고 사적인 왕래 및 통신을 금지하였다.

조선초기 향화왜인에 대한 기본정책은 가는 자는 막지 않고 오는 자는 거절하지 않는 것이었다. 따라서 향화왜인 중에는 일본으로 돌아가는 자도 있었다. 그러나 向化僧 信玉과 雪明처럼 수년 동안 전국의 각지를 유람하여 산천의 형세와 허실을 모두 알고 있는 자들은 정보의 유출을 우려해서 돌려보내지 않았다.

조선에서는 관직을 제수받지 못한 일반 향화왜인을 각 지방에 분치하여 식량과 토지, 의복, 집 등을 하사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조선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田租, 賦役, 軍役을 면제해주었다. 반면에 향화왜인 중에서 왜구의 우두머리나 의술·제련술 등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벼슬을 주고 서울에서 거주하게 하였다. 이들은 관직에 상응하는 녹봉과 의복, 집, 노비 등을 지급받았으며, 일부는 성씨와 이름, 관향을 하사받았다. 한편 조선에서는 향화왜인 중에서 죄를 지은 자는 조선의 법률에 따라서 처벌하였으나 減罪律을 적용하여 가볍게 처벌하였다.

조선의 향화왜인 우대책에도 불구하고 향화왜인과 그의 후손들이 조선의 사회에 정착하여 생활하지 못하였던 것 같다. 그 이유는 첫째 향화왜인의 대부분이 對馬島 출신이 많았기 때문에 어로나 상업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농사에 익숙하지 못하였다. 둘째는 일본과 조선의 언어 및 문화, 풍습 등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셋째 임진왜란으로 계기로 조선에서는 일본을 '不具戴天之 원수'로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조선중기 이후 족보가 보급되고 동족마을이 형성되면서 자기 가문과 가계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어 갔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향화왜인은 조선의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였거나 자신의 출신을 감추고 살아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제어] 향화왜인, 왜구, 수직왜인, 對馬島, 皮尙宜

* 이 논문은 2016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조성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이 글은 2016년 11월 24일에 열린 제46회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정기학술회의 〈한국사 속의 외래인, 이주와 삶〉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전북대학교 교수 / mjhan@jbnu.ac.kr

I 목 차 I

- | | |
|------------------|---------------------|
| I. 머리말 | IV. 향화왜인에 대한 정책과 처우 |
| II. 일본인의 향화 배경 | V. 맺음말 |
| III. 향화왜인의 향화 유형 | |

I. 머리말

일본인의 한반도 이주는 조선시대 이전인 고려시대에도 존재하였다.¹⁾ 그러나 이 시기 일본인의 한반도 이주 사례는 매우 적었다. 반면에 조선 전기에는 다른 어느 시대보다도 일본인의 한반도 이주가 많았다. 특히 1410년경에는 경상도에 분치된 이주 일본인의 수가 2,000여명이 넘었다고 한다. 조선에서는 일본에서 조선으로 이주한 왜인을 ‘향화왜인’이라 칭하였다.²⁾

이처럼 조선 전기에 일본인의 조선 이주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종래의 연구는 소수의 학자들에 의해 행하여졌으며, 주로 향화왜인에 대한 제도사적인 검토나 임진왜란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³⁾ 다만 최근에 皮尙宜, 平道奎 등의 향화왜인이 조선에 이주한 이후 어떻게 생활하였는가를 고찰한 연구가 있다.⁴⁾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향화왜인이 조선에 이주한 이후의 생활과 정착과정, 그 후손들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발표에서는 먼저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조선 전기에 일본인이 조선에 이주하게 된 배경과 향화왜인의 유형 및 실태를 정리하려고 한다. 둘째, 조선조정에서는 향화왜인을 어떻게 수용하고 통제하였으며, 향화왜인이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였는지를 고찰하려고 한다. 셋째, 조선조정에서는 향화왜인이 조선에서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실시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조선의 향화왜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조선에서 정착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추론해보려고 한다.

1) 고려 전기에는 일반 백성들이나 商倭들이 한반도에 이주하였으며, 고려 후기에는 왜구들이 주로 이주하였지만 그 사례는 매우 적었다. 한문중, 『조선전기 향화 수직왜인 연구』, 국학자료원, 2001, 24쪽 참조.

2) 조선에서는 이민족의 이주행위를 ‘投化’ ‘向化’ ‘歸化’ ‘來降’ ‘來投’ ‘內附’ 등으로 다양하게 기록하였지만, 그 중 ‘投化’와 ‘向化’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이를 혼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經國大典』에는 ‘향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經國大典註解』 戶典 收稅條에는 “향화는 즉 왜·야인이 향국투화한 자이다(向化卽倭野人之向國投化者)”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조선 초기에 다양하게 사용되었던 용어들이 『經國大典』의 편찬시기에 ‘향화’라는 용어로 법제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예조에서 편찬한 자료인 『向化案』과 『向化人謄錄』에도 ‘향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민족의 한반도 이주 행위를 포괄하는 용어로 ‘향화’를 사용하였으며, 그러한 행위를 한 왜인을 ‘향화왜인’으로 규정하였다. 향화와 향화인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한문중, 위의 책, 19~23쪽 참조.

3) 李章熙, 「王亂時 投降倭兵에 대하여」, 『한국사연구』 6, 한국사연구회, 1971; 김문자, 「임란시 향왜 문제」,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제장명, 「임진왜란 시기 향왜의 유치와 활용」, 『역사와 세계』 32, 효원사학회, 2007; 한문중, 「임진왜란 시의 降倭將 金忠善과 『慕夏堂文集』」, 『한일관계사연구』 24, 2006; 한문중, 『조선전기 향화 수직왜인 연구』, 국학자료원, 2001.

4) 한문중, 「조선초기 향화왜인 皮尙宜의 대일교섭 활동」, 『한일관계사연구』 51, 2015; 한문중, 「조선초기 대마도의 향화왜인 平道奎」, 『군사연구』 141, 2016.

II. 일본인의 향화 배경

조선시대 향화왜인에 관한 최초의 사료는 1395년(태조 4) 1월에 “왜인 表時羅 등 4인이 와서 항복하니, 경상도의 주군에 분치하였다”⁵⁾는 것이다. 『조선왕조실록』 등의 사료를 종합해 보면 왜인 表時羅는 대마도의 왜구였으며, 조선시대 최초의 향화왜인이었다. 표시라가 來降한 이후 왜구의 두목인 林溫 등이 60여척의 배를 거느리고 경상도 寧海 丑山島에 이르러 항복을 요청한 것⁶⁾을 비롯하여 疾六·非疾時知 등의 왜구가 來降하였다. 결국 조선초기의 향화왜인은 주로 왜구로서 투항한 降倭였으며, 이는 조선의 왜구대책에 따라 왜구가 평화적인 통교자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 초기 특히 태조대의 향화왜인이 대부분 왜구였거나 왜구와 관련이 있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조선 초기 향화왜인의 발생 배경은 고려말 조선초기의 왜구의 침입과 그에 대한 조선의 왜구대책에서 찾아야 한다. 왜구는 1223년(고종 10)에 金州地方에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그 이후 1392년(공양왕 4)까지 총 529회를 침입하였다. 왜구의 침입이 본격화된 때는 1350년(충정왕 2)부터이며, 특히 왜구의 침입이 극심하였던 시기는 우왕대(1375~88)로 재위 14년 동안에 침입회수가 무려 378회(연평균 27회)에 이르렀다.⁷⁾ 왜구는 충청·전라·경상도지역을 비롯하여 전국의 각지에 침입하여 미곡과 인명을 약탈해갔다. 이 때문에 고려의 사회는 커다란 혼란에 빠지게 되었으며, 고려가 멸망하는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조선이 건국된 후에도 왜구문제는 대일외교의 커다란 골칫거리였다. 이에 조선 조정은 고려 말의 왜구대책을 계승하여 해양의 방어를 충실하게 하는 한편 외교적인 노력과 왜구에 대한 회유책을 병행하였다. 먼저 1392년(태조 원년)에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각 도의 騎船軍과 陸守軍, 雜役人의 징발을 금지하는 한편 군적을 점검하였다. 또한 수군의 관직을 설치하고 직제를 개편하였으며, 병선을 건조하거나 수리하여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도록 하였다.⁸⁾ 특히 수군의 정비와 병선의 증가는 왜구의 침입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수군의 전략 전술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그 결과 종래에는 육지에서 왜구를 토벌하였으나 이제는 ‘바다에 나아가 왜구를 포획’하는 적극적인 전략으로 변하였다.⁹⁾

한편 조선에서는 건국 초부터 幕府將軍을 비롯하여 九州節度使·大內殿·對馬島主·壹岐島主 등에게 사신을 파견하여 왜구의 금지와 피로인의 송환을 요청하는 등의 외교적인 교섭을 진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조선에서는 왜구가 투항하면 그들에게 토지와 식량, 집 등을 하사하고 관직을 제수하는 등의 회유책도 병행하였다. 특히 태조대에는 降倭나 향화왜인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왜구의 진압과 피로인 송환에 적극 협력한 일본의 지방 세력에게 통교상의 혜택을 주기도 하였다. 그 결과 조선에 투항 또는 향화하는 왜구와 왜인이 급증하였으며, 왜구의 침입도 점차 줄어들었다.¹⁰⁾

5) 『태조실록』 권7, 4년 1월 무술.

6) 『태조실록』 권10, 5년 12월 계사.

7) 羅鍾宇, 「韓國中世對日交涉史研究」,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1992, 96~99쪽 참조.

8) 『태조실록』 권3, 2년 5월 경오; 『태조실록』 권4, 2년 7월 무신; 『태종실록』 권11, 6년 4월 신미.

9) 張學根, 『朝鮮時代 海洋防衛史』, 創美社, 1987, 40쪽 참조.

이와 같이 조선조정의 다양한 왜구대책과 동북아시아 국제정세의 안정으로 왜구는 조선에 투항 또는 향화하였거나 興利倭人·受職倭人이 되어 來朝하기도 하고, 일본에 거주하면서 使送倭人을 파견하는 통교무역자로 변질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1395년(태조 4)에 왜인 表時羅 등 4인이 처음으로 투항하였으며, 그 이듬해에는 왜적선 60여척이 경상도 영해 축산도에 와서 항복을 요청하였다.

조선초기의 향화왜인은 대부분 왜구로서 투항한 자들이었다. 그러나 향화왜인은 흉년이나 식량의 부족으로 인한 생활고 때문에 조선으로 이주하였거나 도망쳐온 자, 대마도주의 사신으로 또는 도주의 허락을 받고 온 자, 대마도정벌 시에 각 지방에 分置 억류된 자, 조선의 피로인이나 표류인을 데리고 온 자, 조선의 사절과 동행하여 온 자, 불교의 수행을 목적으로 향화한 왜승, 三浦恒居倭人 중 조선술·제련술 등 특별한 기술이 있는 자 등으로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갔다. 그 결과 향화왜인은 계속 증가하여 1410년(태종 10)에는 경상도에 분치된 향화왜인의 수가 무려 2,000여명이 넘었다고 한다.¹¹⁾

결국 향화왜인의 발생배경은 조선조정의 왜구대책 실시로 더 이상 왜구가 조선 지역을 약탈하기 힘들었다는 점과 토지와 식량의 부족으로 인한 생활고 때문이었다. 이는 향화왜인의 대다수가 식량이나 생활필수품이 부족한 대마도의 왜인들이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¹²⁾

Ⅲ. 向化倭人の 유형

『조선왕조실록』과 『해동제국기』 등에 기록된 조선전기(1392~1591) 왜인의 향화 사례는 총 73건이었다. 왕대별로는 태조대 16건, 정종대 3건, 태종대 9건, 세종대 43건, 성종대와 연산군대가 각각 1건씩이었다.¹³⁾ 이를 통해서 보면 조선전기 왜인의 향화는 태조대와 세종대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태조대에는 왜구로서 투항한 자가 많았으며, 세종대에는 대마도정벌 때에 구류된 왜인과 포로, 생활고 등으로 자원해서 투항한 자들이 많았다. 또한 1444년(세종 26) 이후에는 향화왜인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그 이유는 1444년부터 일본에 거주하는 왜인에게도 관직을 제수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왜인들이 조선에 향화하지 않더라도 일본에 거주하면서 조선의 관직을 제수 받고 수직왜인이 되어 조선과 통교무역을 할 수 있었다.¹⁴⁾

10) 한문중, 「朝鮮前期 對日外交政策 研究－對馬島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1996, 13쪽 참조.

11) 한문중, 앞의 책, 27쪽 참조.

12) 대마도는 전 섬의 88%가 산지이고, 또한 토양이 척박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식량이나 생활필수품을 섬 밖에서 조달하여야 했다. 또한 대마도는 거리상으로 九州의 博多보다는 조선이 훨씬 가까웠기 때문에 부족한 식량이나 생활필수품 등을 가까운 조선으로부터 조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대마도의 자연적 지리적 조건 때문에 대마도인들이 왜구의 주축이 되어 조선의 연안에 침입하여 약탈하기도 하였으며, 그 중의 일부는 조선에 向化하여 가옥과 식량, 토지 등을 하사받고 정착하였던 것으로 생각한다.

13) 조선전기 왜인의 향화 사례는 한문중, 앞의 책, 30~37쪽 참조.

14) 한문중, 위의 책, 28쪽 참조.

1. 降倭

향화왜인의 첫 번째 유형은 조선의 왜구대책 실시로 투항해 온 항왜를 들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表時羅로, 그는 1395년(태조 4) 1월에 투항하여 향화왜인이 되었다.¹⁵⁾ 그 다음 해 12월에는 만호 林溫 등이 왜 적선 60척을 거느리고 경상도 영해 丑山島에 와서 변방의 토지와 식량을 주면 왕에게 충성하고 다른 왜구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겠다는 글을 올려 투항을 요청하였다.¹⁶⁾ 또한 1396년 12월에는 왜구의 두목 疾六이 3명을 거느리고 투항하였다. 이들이 투항한 이유는 “전하께서 항복하는 자를 어루만져 안정시켜주고 지난날의 사악한 행동에 대해 죄를 묻지 않는다기에 토지를 청해서 백성이 되고자 한다.”¹⁷⁾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왜구들이 조선에 투항하면서 토지나 식량 등을 요청한 것으로 보아 그들의 투항배경은 식량의 부족으로 인한 생활고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향화왜인으로서는 表時羅, 羅可溫(林溫)과 아들 都時老, 林溫의 부하인 望沙門·昆時羅·沙門吾羅·三寶羅平·吾音甫·望時羅·阿時羅·賢准, 그리고 疾六(藤六)과 함께 투항한 非疾時知 등이 있다. 특히 이들은 非疾時知를 제외하고 모두 관직을 하사받고 이름도 조선식으로 개명하였다.¹⁸⁾

한편, 향화왜인 중에는 왜구의 토벌에 불안을 느껴 투항해 온 자들도 있었다. 즉 1399년(정종 원년) 11월에 왜선 7척이 명의 연해를 약탈하고 돌아가다가 서북면 宣州에 이르렀는데 일본에서 九州의 大內義弘이 왜구를 섬멸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에게 화가 미칠까 두려워하여 조선에 투항하였다.¹⁹⁾ 이때의 항왜는 藤時羅老·藤望·吾時羅·彼堅都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 拘留倭人和 포로

조선에서는 대마도정벌에 앞서 군사상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선에 와 있던 사송왜인과 홍리왜인 591명을 경상도·충청도·강원도에 나누어서 분치하였다. 그 후 조선에서는 분치한 왜인을 대신들에게 나누어주거나 각 관청에 分給하여 노비로 삼았다. 대마도정벌 이후 대마도주 등이 구류왜인의 송환을 요청하자 조선에서는 구류왜인의 희망에 따라 일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는 돌려보내고, 조선에 그대로 머무르기를 원하는 자는 閑田을 주어 復戶하고 부모 형제들과 한곳에 모여 살도록 하였다.²⁰⁾ 결국 조선에서는 구류왜인 중에서 조선에 머물기를 희망하는 자를 향화왜인으로 받아들였다.

한편 향화왜인 중에는 대마도정벌이나 왜구의 토벌 시에 붙잡혀 온 포로들도 있었다. 그 중 左衛門三郎과 藤次郎은 대마도정벌 때에 붙잡혀 와 군현에 분치된 자들이었다. 이러한 유형의 향화왜인은 대마도정벌을 전

15) 『태조실록』 권7, 4년 1월 무술. 한편 1429년에 대마도주의 宗貞盛이 表時羅의 아들 天命의 侍衛를 요청하였다(『세종실록』 권46, 11년 10월 무자).

16) 『태조실록』 권10, 5년 12월 계사.

17) 『태조실록』 권10, 5년 12월 을사.

18) 한문종, 앞의 책, 29쪽 참조.

19) 『정종실록』 권2, 원년 11월 갑술, 신묘.

20) 한문종, 앞의 책, 38~39쪽 참조.

후한 시기에 집중되지만 그 수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²¹⁾

3. 대마도주의 使送倭人

향화왜인 중에는 대마도주에 의해서 조선에 파견되었거나 도주의 허가를 받고 향화한 자도 있다. 이러한 유형의 향화왜인으로서는 平道全과 表思溫이 있다. 평도전은 대마도의 관인으로 대마도주 宗貞茂의 명으로 1407년 7월에 향화하여 員外司率少監에 제수되고 은대를 하사받았다. 그 후 平道全은 1408년과 1409년, 1411년에 세 차례나 조선의 사절로서 대마도에 파견되어 조선과 대마도의 외교관계를 원활하게 조정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그는 왜구의 침략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직접 왜구의 토벌에 참가하여 전공을 세우기도 하였다. 이러한 공으로 관직이 정3품인 상호군에 오르기도 하였다.²²⁾ 한편 조선에서는 表思溫의 향화 요청에 대해 도주의 서계가 없다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다가 후에 宗貞盛의 서계를 가지고 오자 향화를 허락하고 관직을 제수하였다.²³⁾

4. 송환된 被擄人을 따라 온 자

향화왜인 중에는 고려말 조선초에 왜구에게 붙잡혀 간 피로인을 따라 조선에 온 자도 있었다. 이러한 유형의 향화왜인은 麻多和知가 대표적이다.²⁴⁾ 그 외에도 1397년 8월에는 왜인 2명이 피로조선인 19명, 피로중국인 3명과 함께 와서 향화하였으며, 그 이듬해 5월에는 왜인 9명이 대마도에 있던 피로조선인과 함께 와서 향화하였다.²⁵⁾

한편 향화왜인 중에는 피로조선인 또는 피로중국인과 함께 몰래 도망쳐 나온 자도 있었다. 1429년(세종 11) 6월에는 왜인 馬多時知가 피로중국인 吾敦而老 등과 함께 도망쳐 나와 조선에서 거주하기를 요청하였다. 또한 그 이듬해 4월에는 왜인 4명이 피로조선인 4명과 피로중국인 2명과 함께 배를 타고 도망쳐왔다.²⁶⁾

5. 倭僧

향화왜인 중에는 불도의 수행을 목적으로 조선에 온 승려도 있었다. 최초의 向化倭僧은 原海이다. 그는 1397년(태조 6) 8월에 처자와 함께 향화하였는데, 의술에 정통하였기 때문에 典醫博士를 제수받고 平氏 姓

21) 이러한 유형의 향화왜인은 伊只時羅 · 源三郎 · 慶秀 · 三味三甫羅 · 甘因珠 · 古羅時羅 · 鳩方 등이 있다. 한문중, 앞의 책, 39쪽 참조.

22) 한문중, 앞의 논문, 2016, 7~22쪽 참조.

23) 『세종실록』 권104, 26년 6월 을유.

24) 그는 1426년(세종 8)에 피로인 德恩船軍 曹德生과 礪山船軍 朴亡達을 따라왔는데, 조선에서는 麻多和知를 피로인 중의 한 사람과 같이 거주하게 하고 그 이듬해까지 식량과 곡식종자를 지급하였다. 『세종실록』 권33, 8년 8월 신미.

25) 『태조실록』 권12, 6년 8월 임인; 『태조실록』 권14, 7년 5월 신미.

26) 『세종실록』 권44, 11년 6월 병술; 『세종실록』 권48, 12년 4월 갑술.

을 하사받았다.²⁷⁾

信玉은 어렸을 때 이름이 豆伊多知로 時羅三甫羅의 아들이다. 그는 대마도 沙浦에 살다가 12세에 승려가 되었는데, 아버지 時羅三甫羅가 도주의 사송으로 올 때 따라 왔다. 그러나 제포에서 아버지가 죽자 전국의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19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였다. 그 후 서울에 와서 1471년(성종 2) 4월에 度牒을 받고 머물러 살기를 요청하였다.²⁸⁾ 또한 1497년(연산군 3) 1월에는 博多人 雪明이 14살 때 대마도인 伊羅時羅를 따라 제포에 왔다가 항거왜인에게 매매되었다. 그 후에 승려가 되어 전국의 산천을 유람하였다.²⁹⁾ 이 밖에도 일본인 승려인 源才와 法勤은 조선에 향화하여 불도를 닦았던 것으로 추정된다.³⁰⁾

6. 자원해서 향화하거나 도망쳐 온 자

향화왜인 중에는 스스로 향화한 자와 죄를 짓고 도망쳐 온 자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1419년(세종 원년) 2월에 대마도인 邊三甫羅·萬時羅 등이 처자 등 24명을 데리고 와서 토지가 부족하고 賦稅의 과중으로 생활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조선에서 거주하기를 요청하였다.³¹⁾ 또한 1426년(세종 8) 1월에 대마도인 時羅三甫羅·沙伊文仇老 등 남녀 14명이 본토에 의지할 친척이 없고 생활하기도 곤란하므로 해변에 살면서 고기를 잡고 술을 팔아 생활하기를 청하였다. 그리고 동년 7월에는 왜인 沙斤古羅가 흉년을 이유로 처자를 데리고 와서 거주하기를 희망하자 그들을 충청도 각 고을에 안치하고 의복과 식량·토지 등을 하사하였다.³²⁾

이러한 유형의 향화왜인은 1419년부터 1431년까지의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모두 대마도인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향화의 이유는 토지의 부족과 과중한 조세 등으로 인한 생활고 때문이었다.³³⁾

한편 향화왜인 중에는 일본에서 죄를 짓고 도망쳐온 자들도 있었다. 1435년(세종 17) 8월에 왜인 蔓都老 등 26명이 대마도에서 도망쳐 나오자 이들을 전라도지방에 나누어서 분치하고 서로 소식을 알지 못하도록 하였다.³⁴⁾

7. 三浦 恒居倭人 및 기타

조선에서는 삼포 항거왜인 중에서 조선술·제련술 등의 기술을 가진 자를 서울로 불러들여 향화하도록 한

27) 그는 어의로서 활약하면서 전의감, 판전의감사, 중추원부사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그의 아들 卞順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의원으로 활약하여 관직이 行大護軍에 이르렀으며, 昌原을 관향으로 하사받았다. 『태조실록』 권12, 6년 8월 갑진; 『세조실록』 권28, 8년 4월 기축.

28) 『성종실록』 권10, 2년 4월 갑인.

29) 『연산군일기』 권21, 3년 1월 기유.

30) 『세종실록』 권19, 5년 1월 경술; 권20, 5년 5월 신사; 권21, 5년 10월 기사; 권19, 5년 3월 계미.

31) 『세종실록』 권19, 1년 2월 임신.

32) 『세종실록』 권31, 8년 1월 무술; 권33, 8년 7월 갑인.

33) 이러한 유형의 향화왜인은 老吾妙·餘時老·汝母時羅·表阿時羅·加快波弓·都時羅·沙伊文仇老 등이 있다. 한문중, 앞의 책, 40~41쪽 참조.

34) 『세종실록』 권69, 17년 8월 기유.

사례도 있다. 看智沙也文은 원래 乃而浦에 거주하는 倭鐵工으로 철전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그 때문에 조선에서는 그를 처자와 함께 서울에 거주하게 하면서 제련술을 전수받으려고 하였다. 또한 1438년에 내이포에서 걸식하던 왜인 也馬沙其가 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경시켜 군기감의 장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칼 만드는 기술을 전수하도록 하였다.³⁵⁾

한편 1430년(세종 12)에는 염포에 와 있던 왜인 而羅三甫羅가 염포의 왜관 근처에서 고기잡이하며 살기를 요청하자 그를 근처의 고을에 살게 하고 閑田과 의복·식량을 주어 다른 사람보다 잘 보살피주도록 하였다.³⁶⁾

IV. 向化倭人에 대한 정책과 처우

1. 향화왜인의 통제와 歸島

조선에서는 향화왜인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하였을까? 첫 번째 통제책은 향화왜인을 여러 지방에 나누어서 거주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통제책에 따라 表時羅와 같이 온 왜인 4명을 경상도의 주군에 분치하였다. 또한 1399년(정종 2) 서북면 선주에 왜선 7척이 투항해 왔을 때에도 그 중 14명은 서울로 데리고 오고 나머지 만호 藤望 등 60명과 중국인 남녀 21명은 서북면의 각 군현에 분치하였다.³⁷⁾ 한편, 각 지방에 분산 배치한 향화왜인 중에는 경상도나 전라도 등지의 연해에 거주하는 자들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연해의 주군에 분치된 향화왜인이 홍리왜인과 서로 왕래하는 폐단이 발생하자 그들을 다시 내륙의 산간벽지로 옮기도록 하였다.³⁸⁾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향화왜인의 분치지역은 함경도의 吉州, 강원도의 鐵原, 전라도의 鎭安·泰仁·長城·旌義, 충청도의 내륙과 公州, 경기도의 廣州, 경상도의 奉化·宜寧·順興·迎日 등 주로 내륙 산간지역이었다. 이처럼 조선에서 향화왜인을 외방이나 산간지방에 분치한 이유는 향화왜인을 위험한 존재로 인식하고 그들의 분산을 통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려는 향화왜인 통제책의 일환이었다고 생각한다.³⁹⁾

두 번째 통제책은 향화왜인의 외방 출입금지와 사적인 왕래 및 통신을 금지하는 것이었다. 먼저 조선에서는 1408년 5월에 서울에 거주하는 향화왜인이 京外에 마음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병조에 소속시켜 관리하였다.⁴⁰⁾ 또한 각 지방에 거주하는 향화왜인 특히 경상도와 전라도의 해안에 거주하는 향화왜인이 홍

35) 한문중, 앞의 책, 46쪽 참조.

36) 『세종실록』 권50, 12년 윤 12월 신해; 『세종실록』 권93, 23년 6월 기축.

37) 『정종실록』 권1, 1년 11월 신묘.

38) 이는 1407년 7월에 경상도 병마절제사 姜思德이 올린 각 포구의 방어대책에 잘 나타나 있다(『태종실록』 권14, 7년 7월 무인).

39) 한문중, 앞의 책, 58쪽 참조.

40) 『태종실록』 권15, 8년 5월 기미.

리왜인과 서로 왕래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한편 그들을 내륙의 산간지방으로 옮겨 안치하기도 하였다.⁴¹⁾

이러한 향화왜인 통제책은 대마도 정벌에 앞서 각 지방에 분치된 왜인과 왜노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그리하여 각 지방에 분치된 왜인들이 난잡하게 왔다 갔다 하며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지방의 수령이 왕에게 보고하지 않고 곧 바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분치된 왜노비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거나 자기들끼리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그의 주인이 관가에 고발하여 죄를 다스리도록 하였다.⁴²⁾

한편, 조선에서는 향화왜인이 사적인 통신을 통해서 조선의 허실을 왜인들에게 누설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적인 통신을 금지하도록 하였다.⁴³⁾ 그리고 조선조정이 분치된 향화왜인의 외방 출입금지와 사적인 왕래·통신을 제한한 이유는 그들이 각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산천의 형세와 주군의 허실을 모두 정탐하여 치안 경비상 예측하지 못할 사태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었다.

세 번째의 통제책은 향화왜인을 호적에 올려서 관리하는 것이었다. 먼저 조선에서는 1408년 5월에 서울에 거주하는 향화왜인을 호적에 올리고 병조로 하여금 관장하도록 하였다. 또한 병조에서는 서울이나 지방에 거주하는 향화왜인에 관한 자료를 ‘倭案’에 기록하여 관리하였으며, 이 ‘왜안’은 對馬島主 등이 조선에 억류된 자와 향화인의 송환을 요청할 때마다 그들을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로도 활용되었다.⁴⁴⁾

조선 초기의 향화왜인에 대한 기본정책은 오는 자는 막지 않고 돌아가려는 자는 붙들지 않는 것이었다.⁴⁵⁾ 이에 따라서 향화왜인이 일본으로 갔다 조선으로 다시 오고 오지 않고는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선의 향화왜인 정책에 따라 일본으로 돌아간 자는 表時羅 등 17명이었다. 그 중에는 조선에 다시 돌아 온 자도 있었지만 일본에 그대로 머물면서 후에 통교왜인으로 도향한 자들도 있었다.⁴⁶⁾ 이는 계해약조 체결 이후에 일본에 거주하는 수직왜인이 나타나는 배경이 되었다.

이처럼 조선 초기에 향화왜인이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향화승 信玉과 雪明처럼 수년간에 걸쳐 전국의 각지를 유람하여 산천의 형세와 허실을 알고 있는 자는 돌려보내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⁴⁷⁾ 또한 1437년 3월에 대마도주 宗貞盛이 배를 훔쳐 타고 도망하여 경상도의 山達浦에 정박한 대마도왜

41) 『태종실록』 권14, 7년 7월 무인.

42) 한문종, 앞의 책, 58-59쪽 참조.

43) 『세종실록』 권24, 6년 5월 무자.

44) 한문종, 앞의 책, 61쪽 참조.

45) 이는 1396년 12월에 항왜 疾六이 태조를 알현할 때에, 태조가 疾六에게 가는 자는 막을 필요가 없고 오는 자는 거절할 필요가 없으며, 거취는 오직 향화인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음을 강조한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태조실록』 권10, 5년 12월 을사.

46) 일본으로 돌아간 향화왜인은 表時羅·藤六 등 17명이었으며, 이들은 모두 대마도인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일본으로 돌아간 이유는 부모형제 및 처자와의 상봉, 가족의 장례, 掃墳, 老病 때문이었다. 한문종, 앞의 책, 62-63쪽 참조.

47) 信玉은 대마도 沙浦에 살다가 12세에 승려가 되어 전국의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19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였다. 그 후 서울에 와서 1471년(성종 2) 4월에 도첩을 받고 머물러 살기를 요청하였다. 조선에서는 그가 전국 산천의 형세와 허실을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대마도로 돌려보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안성의 鳳安寺에 거주하게 하고 관찰사로 하여금 그의 안주 여부를 조사하여 연말마다 보고하도록 하였다(『성종실록』 권10, 2년 4월 갑인). 그리고 博多人 雪明은 14살 때 대마도인을 따라 제포에 왔다가 중이 되어 전국의 산천을 유람하고 본토로 돌아가려 하자 信玉의 예와 같이 그를 돌려보내지 않고 投化

인 馬三郎 등 26명의 송환을 요청하자 조선에서는 많은 논란 끝에 이들을 돌려보내면 후에 투화하는 자가 끊어질 것을 염려하여 종적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송환을 거절하였다.⁴⁸⁾ 그리고 1445년에 대마도주가 也馬沙其의 송환을 요청하자, 조선에서는 그가 향화한 후 7년 동안 군기감의 장인들과 거주하면서 화약 만드는 법을 배웠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송환을 미루다가 도주가 1년 뒤에 다시 돌려보내 줄 것을 요청하자 돌려보내기도 하였다.⁴⁹⁾

2. 향화왜인에 대한 처우

조선의 향화왜인에 대한 정치·사회·경제적 조치는 관직의 제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관직을 제수받지 못한 향화왜인은 각 지방에 분치되어 식량과 토지, 의복, 집 등을 하사받고 田稅, 賦役, 軍役을 일 정기간 면제받았다. 그에 비해 관직을 제수받은 향화왜인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녹봉, 月料와 馬料, 의복, 집, 노비 등을 지급받았으며, 본인이나 가족이 죽었을 경우 致祭와 賻儀를 받았다. 또한 이들 중의 일부는 성씨와 이름, 관향을 받기도 하였다.⁵⁰⁾

(1) 식량·의복·토지·가옥의 하사

조선초기의 향화왜인은 식량과 토지의 부족, 기근, 과세의 과중 등 생활고 등으로 인하여 이주한 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이 때문에 조선에서는 향화왜인이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토지와 식량, 집, 의복 등을 하사하였다.

향화왜인에게 의복과 식량을 사급한 최초의 사례는 1398년 7월에 대마도에 있던 조선인 피로 8명과 함께 온 왜인 9명을 각 주현에 분치하고 그들에게 의복과 식량을 지급한 것이다.⁵¹⁾ 그러나 이때에는 향화왜인에게 하사하는 식량과 의복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것 같다. 그 후 향화왜인의 수가 증가하자 조선에서는 1418년 이후부터는 향화왜인에게 식량을 주는 기간을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로 제한하려 하였다.⁵²⁾ 이러한 조치에 따라 1423년(세종 5) 2월에 투항한 대마도인 邊三甫羅·萬時羅 등 24명을 전라도에 안치하고 곡식이 익을 때까지 식량(糧料)을 지급해 주도록 하였다.⁵³⁾

한편, 조선에서는 향화왜인에게 의복을 지급해 주었다. 1423년(세종 5년) 5월에 예조에서 올린 啓를 보면, 1423년 이전까지는 관직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향화인에게 3년 동안 사시사철에 옷 한 벌씩을 제용감에서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옷을 만들어 주는 일이 번거로웠기 때문에 옷 대신에 봄과 여름에 저포 2필과

人의 예에 따라 서울에 살도록 하였다(『연산군일기』 권21, 3년 1월 기유).

48) 『세종실록』 권76, 19년 3월 계사.

49) 『세종실록』 권107, 27년 2월 신해; 권111, 28년 3월 정유.

50) 향화왜인의 처우는 한문중, 앞의 책, 65~89쪽 참조.

51) 『태조실록』 권14, 7년 5월 신미.

52) 『태종실록』 권35, 18년 3월 경오.

53) 『세종실록』 권19, 5년 2월 임신, 3월 병오.

면포·마포 각 1필, 가을과 겨울에 면주 4필, 저포 2필, 면포 1필, 면자 3근 7냥을 주도록 법제화하였다. 이처럼 조선에서는 모든 향화왜인에게 3년 동안 의복을 만들어 주거나 면포와 마포 등의 면직물을 지급해 주었다.⁵⁴⁾

또한 조선에서는 향화왜인에게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지급하였다. 특히 토지의 지급 사례는 1423년 이후에 많이 나타난다. 이들에게 하사한 토지는 대체로 閑田이었다. 이와 함께 조선에서는 그해의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곡식의 종자도 지급하였다.

그리고 조선에서는 향화왜인에게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었다. 지방에 분치한 향화왜인은 물론이고 시위하는 향화왜인에게도 거처할 집을 마련해 주었다. 처음으로 집을 지급한 사례는 1409년 11월에 평도전에게 윤목의 집을 하사한 것이다. 그 후에도 平道全에게 경상도에 집을 지어주도록 하였다.⁵⁵⁾ 한편 1434년 4월에는 향화하여 시위하는 자들에게 사급하는 집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에서는 향화하여 시위하는 왜인과 야인에게 관청에 속한 집이나 빈 집을 주고, 만약 줄 집이 없으면 膳工監으로 하여금 큰 길 좌우에 있는 빈 행랑을 고쳐서 가구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2칸이나 3칸 크기로 만들어 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향화왜인이 사급받은 집은 예조와 한성부가 관리하였으며, 지급받은 집은 당대에는 매매를 금지하고 그의 자손대에 이르러서 매매할 수 있게 하였다.⁵⁶⁾

(2) 田租와 賦役·軍役의 면제

조선에서는 향화왜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田租와 賦役을 면제해 주었다. 이러한 최초의 조치는 1423년 3월 전라도에 안치한 향화왜인에게 전조는 3년, 요역은 10년 동안 면제해 주는 것이었다.⁵⁷⁾ 그 후 이 규정은 1424년에 새로 향화한 사람들에게까지 확대 적용되었으며,⁵⁸⁾ 『경국대전』의 편찬으로 법제화되었다. 그리하여 향화왜인은 3년 동안 전조를 감면하고, 새로 향화한 자에게는 10년 동안 復戶하도록 하였다.⁵⁹⁾

한편 조선에서는 향화인의 군역도 일정기간 면제해 주었다. 즉 성종 18년에 예조에서 향화인의 손자 대부터 군역에 充定할 것을 요청하자, 왕이 이 일을 영돈령 이상의 관리들에게 의논하게 한 후 증손 대에 이르러서 군역을 충정하라고 명하고 있다.⁶⁰⁾ 이로서 보면 향화인은 그의 손자 대까지는 군역을 면제받았으며, 그 다음 세대인 증손자 대에 이르러 군역이 부과되었음을 알 수 있다.

54) 한문중, 앞의 책, 67쪽 참조.

55) 『태종실록』 권19, 9년 11월 정유; 『태종실록』 권29, 14년 9월 을미. 이와 같이 평도전이 다른 향화인과는 달리 우대받은 이유는 그가 對馬島主의 代官으로 向化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결국 조선에서는 평도전을 우대하여 대마도주와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왜구를 침입을 막으려 하였던 것이다. 한문중, 앞의 논문(2016) 참조.

56) 한문중, 앞의 책, 68~69쪽 참조.

57) 傳旨于兵曹 今全羅道安置倭人等 田租限三年 徭役限十年 蠲免(『세종실록』 권19, 5년 3월 병오).

이러한 田租와 賦役의 감면은 이미 중국의 당대부터 시행되었던 제도이다. 『唐拾遺』 賦役令에 의하면 外蕃인이 투화하면 10년간 徭役을 면제하였으며, 夷狄이 투화하면 3년간 요역을 면제하였다.

58) 傳旨 今後 向化新來人 田租限三年 徭役限十年 蠲除(『세종실록』 권25, 6년 7월 경인).

59) 向化人 三年免稅(『經國大典』 권3, 戶典 田稅條), 向化新來人 限十年復戶(『經國大典』 권3, 戶典 復戶條).

60) 『성종실록』 권207, 18년 9월 계묘.

(3) 관직 제수

조선에서는 향화왜인 중에서 왜구의 우두머리나 왜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 그리고 의술·제련술·조선술 등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벼슬을 주어 서울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등 우대하였다. 특히 조선에 향화하여 살면서 조선정부로부터 관직을 제수받은 자들을 ‘향화 수직왜인’이라 칭하였다.⁶¹⁾

기왕의 연구성과에 의하면 조선전기의 향화 수직왜인은 모두 25명이었다. 이들의 특징을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조선초기에 왜구로서 활동하다가 투항하여 관직을 받은 자가 15명으로 매우 많았다. 둘째, 향화 수직왜인 중에는 平原海, 看智沙也文, 表沙貴, 藤次郎 등과 같이 의술이나 제련술, 조선술 등 특정한 기술을 가진 자들이 많았다. 셋째, 平道全과 表思溫처럼 대마도주의 대관으로 또는 도주의 허락을 받고 향화하여 관직을 제수 받은 자가 있었다. 넷째, 이들의 향화 시기가 태조·태종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1444년 이후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섯째, 이들 중에는 관직을 제수받은 후에 대마도로 돌아간 자가 많았으며, 그 중에 일부는 다시 통교자로 도향한 자도 있었다.⁶²⁾

조선에서는 향화 수직왜인이 조선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여 직무를 맡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수직 후 3년 동안 巡廻하여 警守하는 것과 출근하여 上直하는 것을 면제하고 六衙日과 朝賀에만 참석하도록 배려하였다.⁶³⁾ 이와 관련하여 『경국대전』에는 향화인은 매월 1일, 5일, 11일, 15일, 21일, 25일 6차례 예조에 모여 명부에 서명하고, 수직인은 항상 소속된 衛에서 근무하되 朝賀나 朝參에 참석하지 말고 守門 등의 잡사에도 내보내지 말도록 규정되어 있다.⁶⁴⁾ 이러한 규정은 1471년(성종 2)에 예조에서 校正廳에 내린 單子の 조목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⁶⁵⁾

관직을 제수받은 향화왜인은 월료와 마료, 노비, 致祭, 賻儀 등을 받았다. 먼저 조선에서는 향화 수직왜인에게 녹봉과 월료를 지급하였다. 그 중 월료는 향화 수직왜인에게 일정기간에 한해서 매월 지급되는 食料로, 향화한 시기와 생계의 빈부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였다.⁶⁶⁾ 또한 향화 수직왜인에게는 馬料도 지급된 말을 사육하기 위한 마료가 매일 생초 50근이 지급되었다. 마료의 지급 역시 월료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지급 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1453년(단종 1)에는 마료를 향화 후 5년 동안만 지급하도록 제한하였다.⁶⁷⁾

조선에서는 향화 수직왜인에게 노비를 하사하였다. 최초로 노비를 하사한 사례는 1403년에 倭醫 平原海에게 노비 2구를 하사한 것이다.⁶⁸⁾ 그리고 1417년에는 배를 만드는 船匠인 藤次郎과 三末三甫羅에게 집과 양

61) 일반적으로 수직왜인은 조선정부로부터 관직을 제수받은 왜인을 총칭한다. 그러나 수직왜인 중에는 조선에 향화하여 관직을 제수받은 자도 있지만 일본에 거주하면서 관직을 제수받은 자들도 있다. 이같이 수직왜인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양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본고에서는 조선에 향화하여 거주하면서 관직을 제수받은 자를 ‘향화 수직왜인’으로, 일본에 거주하면서 관직을 제수받은 자를 ‘일본거주 수직왜인’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62) 한문중, 앞의 책, 51~53쪽 참조.

63) 『세종실록』 권70, 17년 11월 기묘.

64) 凡向化來者 本曹議其根脚居處功勞才幹 啓聞置簿 移文該曹 除職給料給奴婢有差(세주 向化人 毎月六次 初一日 初五日 十一日 十五日 二十一日 二十五日 會本曹 署名簿 有職者 常仕本衛 一應朝賀朝參勿參 守門等雜事勿差 有犯罪者置簿 每都目 通考仕日及罪犯 移文兵曹陞黜 官給家舍 勿許擅賣 傳至子孫許賣)(『經國大典』 권3, 禮典 待使客條)

65) 『성종실록』 권10, 2년 5월 정유.

66) 『세종실록』 권84, 21년 윤2월 병오.

67) 『단종실록』 권6, 1년 5월 계미.

식, 노비 2구씩을 하사하였다.⁶⁹⁾ 이처럼 조선초기에는 관직을 제수받지 않은 향화왜인에게 특별히 노비를 하사하였으나 후에는 향화 수직왜인으로 그 범위가 제한되었다. 따라서 『經國大典』 禮典 待使客條에는 향화인이 오면 예조에서 그 사람의 출신이나 공로·재주 등을 조사하여 기록해 두고 이를 該曹에 移文하여 관직과 급료·노비 등을 차등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⁷⁰⁾ 이는 향화 수직왜인에게 노비를 하사하는 것이 법제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노비의 하사에 대한 규정은 향화한 자 본인에게만 적용되었고 그의 자손까지는 적용되지 않았던 것 같다.⁷¹⁾

한편 조선에서는 향화하여 수직한 자와 그의 부모 등이 죽었을 경우 치제하거나 부의하였다. 먼저 치제한 사례를 보면 1397년에 향화 수직왜인 林溫의 아들 都時羅가 죽자 태조가 사람을 보내 치제하였다.⁷²⁾ 당시 都時羅는 향화 수직왜인이었다. 이때의 치제는 아마 향왜의 우두머리인 林溫에 대한 배려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임은은 태조의 致祭에 대해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리고 향화 수직왜인이 죽었을 경우는 물론이고 그의 부모나 가족 등이 죽었을 경우에도 쌀과 콩, 종이 등을 부의하였다.⁷³⁾

(4) 賜姓名·賜貴鄉

조선에서는 향화왜인에게 이름을 조선식으로 改名해주기도 하고, 성씨와 관향을 하사하기도 하였다. 먼저 향화왜인에게 성씨를 하사해 준 최초의 사례는 1397년 8월에 原海로, 그는 의술에 정통하였기 때문에 조선 조정으로부터 전의박사를 제수 받고 平姓을 하사받았다.⁷⁴⁾ 한편 조선에서는 향화왜인의 이름도 개명해 주었다. 예를 들면 1398년(태조 7) 2월에 향왜의 우두머리인 疾六·羅可溫을 비롯해서 그의 부하 8명에게 관직을 하사하고 이름을 조선식으로 개명해 주었으며, 1457년(세조 3) 7월에는 왜인 信沙也文의 이름을 金信文으로 바꾸어 주었다.⁷⁵⁾ 특히 성명을 사급받은 향화왜인은 대부분 태조 초에 투항해 온 향왜였다. 이는 조선 조정이 왜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고심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68) 『태종실록』 권5, 3년 5월 정해.

69) 『태종실록』 권33, 17년 윤5월 갑술.

70) 『經國大典』 권3, 禮典 待使客條. 凡向化來者 本曹議其根脚居處功勞才幹 啓聞置簿 移文該曹 除職給料給奴婢有差.

71) 1524년(중종 19)에 향화하여 시위한 金仁福이 향화인의 예에 따라 노비의 하사를 요청한 사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즉 향화인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향화한 후 조선에서 출생한 자는 「子支向化」라 하여 조선의 백성과 같이 취급하였으며, 향화하기 이전에 여진이나 일본 등의 본토에서 출생한 자는 「己身向化」라 하여 향화인으로 대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조에는 金仁福의 경우 그의 아버지가 향화하여 시위하면서 金仁福을 낳았기 때문에 향화인의 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노비를 사급해 주지 말도록 요청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보면 노비는 향화하여 관직을 제수받은 본인에게만 사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중종실록』 권52, 19년 12월 을사).

72) 『태조실록』 권12, 6년 7월 무진.

73) 1406년(태조 6)에 전라도 葛島에서 왜적을 추적하다가 익사한 향왜 吳文과 藤尾에게 부의로 각각 미두 10석과 종이 50권을 하사하였고, 1409년에 平原海의 어머니가 대마도에서 죽자 미두 15석과 종이 1백권을 부의하였다. 또한 1408년에 平道 叢의 父喪에 후하게 賻儀하도록 하였으며, 1417년에 藤次郎이 데리고 온 왜인 三味時羅의 母喪에 미두 10석과 종이 1백권을 부의하였다. 그리고 1423년에는 향화왜인 平三甫羅의 妻父喪에 미두 3石씩을 부의하였다(『태조실록』 권11, 6년 3월 갑오; 『태종실록』 권17, 9년 윤4월 신유; 『태종실록』 권18, 9년 8월 정미; 권33, 17년 5월 임자; 『세종실록』 권20, 5년 6월 병자).

74) 『태조실록』 권12, 6년 8월 갑진.

75) 『태조실록』 권13, 7년 2월 갑오; 『세조실록』 권8, 3년 7월 병술.

한편 조선에서는 향화인의 자손에게 관향을 하사하기도 하였다. 1462년(세조 8년) 4월에 향화왜인 平原海의 아들 平順과 皮沙古의 아들 皮尙宜가 梅佑⁷⁶⁾·唐夢璋의 예에 따라 본관을 하사해 주도록 요청하자, 그들이 조선에서 태어났고 시위한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평순에게 昌原, 피상의에게 東萊를 본관으로 하사하였다. 특히 皮尙宜는 1443년(세종 25)부터 1454년(단종 2년)까지 무려 5차례에 걸쳐 招撫官從事官·司譯院判官·致賻官·通事·宣慰使 등으로 대마·일기에 다녀오는 등 조선전기 대일 외교관계에 있어서 조선의 외교 사행으로서 많은 활약을 하였다.⁷⁷⁾ 이처럼 조선정부는 향화인이나 그의 아들에게 관향을 하사하여 그들이 조선에 완전히 동화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러한 賜姓名, 賜貫鄉은 임진왜란 시기에도 계속되었다.⁷⁸⁾ 참고로 조선전기의 향화왜인에게 賜姓名·賜貫鄉한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向化倭人の 賜姓名·賜貫鄉 일람표

向化 전의 姓名	向化 후의 姓名	賜貫鄉	官職	出典
疾六	藤六		宣略將軍行中郎將	태조 7년 2월 갑오
羅可溫	林溫		宣略將軍行郎將	태조 7년 6월 갑오
原海	平原海		典醫博士	태조 6년 8월 갑진
望沙門	池門		宣略將軍行別將	태조 7년 2월 갑오
昆時羅	藤昆		散員	태조 7년 2월 갑오
沙門吾羅	吳文		散員	태조 7년 2월 갑오
三寶羅平	張寶		散員	태조 7년 2월 갑오
吾音甫	信吾		散員	태조 7년 2월 갑오
望時羅	張望		散員	태조 7년 2월 갑오
玄淮	藤賢		散員	태조 7년 2월 갑오
阿時羅	表時		散員	태조 7년 2월 갑오
?	邊佐		副司正	세종 26년 1월 정사
信沙也文	金信文		兼司僕	세조 3년 7월 병술
	平順	昌原	行大護軍	세조 8년 4월 기축
沙古	皮沙古		副司直	세조 8년 4월 기축
	皮尙宜	東萊	上護軍	세조 8년 4월 기축

* 이 표는 한문중, 앞의 책, 74쪽의 표를 전재한 것이다.

76) 1439년 윤 2월에 奉禮郎 梅佑는 고려시대에 원나라인 僕遜의 아들 判三司事 僕長壽가 慶州를 관향으로 하사받은 전례와 조선 태종때에 원나라인의 자손인 尙山君 李敏道가 慶州를 관향으로 하사받은 전례를 근거로 관향의 하사를 요청하여 忠州를 관향으로 하사받았다. 매우의 할아버지 君瑞는 원나라인으로 고려에 와서 거주하였고 벼슬이 行省提控에 이르렀으며, 아버지 原渚는 조선 태종때에 義州牧使를 역임하였다(『세종실록』 권84, 21년 윤2월 경진).

77) 皮尙宜에 대해서는 한문중, 앞의 논문(2015) 참조.

78) 임진왜란시에 李薊의 휘하 항왜들에게 그의 성을 따라 李姓을 하사하였으며, 黃石山城의 전투에서 공을 세운 沙白丘鳥에게 賜姓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또한 항왜 沙也可에게 金忠善을 賜姓名하였다. 그 외에도 金歸順·金向義·李歸命·李潔 등도 성명을 하사받았다. 이에 대해서는 한문중, 앞의 책, 170~171쪽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5) 결혼과 娶妻

조선에서는 향화왜인에게 조선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1422년 12월에 대마도 정벌 때 붙잡아 온 左衛門三郎과 藤次郎이 대마도의 호족이었기 때문에 서울로 올라오게 집과 음식·의복 등을 주고 양가집 딸을 아내로 삼도록 하였다.⁷⁹⁾ 또한 향화왜인 馬三甫老는 慶州戶長 李問의 양자가 되어 楊洲戶長 韓原의 딸과 혼인하였다.⁸⁰⁾ 이처럼 향화왜인이 조선여인과 혼인하였을 가능성은 많지만 기록이 거의 없어서 정확한 실상은 파악할 수 없다.

한편 조선에서는 사족의 딸로서 나이가 서른이 가깝도록 가난하여 혼인을 하지 못한 자는 예조에서 혼인 비용을 도와주도록 하였다.⁸¹⁾ 이러한 규정은 향화 수직왜인에게도 적용되었다. 그리하여 평안도 양덕에 안치된 향화 향화왜인 平道全이 생계가 어려워져 그 딸이 장성하였음에도 혼인을 하지 못하자 그 지방의 수령으로 하여금 혼인비용을 주어 시집보내게 하였다.⁸²⁾

(6) 과거의 응시 허용 및 取才, 遞兒職

조선에서는 향화인이나 그의 자손이 과거에 응시하는 것을 허용해 주었다. 먼저 1435년(세종 17)에 향화왜인 馬三甫老의 아들 李問이 과거에 응시하려하자 허용해주었으며,⁸³⁾ 1460년(세조 6)에 투화한 야인들이 무과에 응시하기를 청하자 역시 허용해주었다.⁸⁴⁾ 이처럼 조선에서는 향화인과 그의 아들에게 문·무과의 응시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향화인은 여러 가지 우대책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과거에 응시하여 합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향화인은 과거보다는 취재나 체아직을 통해서 관직에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조선에서는 향화인을 試才하여 관직을 제수하였다. 그러나 향화인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규정할 것인지가 문제였다. 이와 관련하여 1439년(세종 21) 5월 의정부에서 아뢴 내용을 통해서 보면 향화인의 범위를 향화한 본인과 그의 아들로 한정하였으며, 이 규정에 따라 향화인을 試才하여 관직을 제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⁸⁵⁾ 또한 조선에서는 향화인이 증가하고 그들에게 제수할 관직이 부족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근무의 勤慢과 범법 사실의 유무, 수직한 시기의 遠近 등을 참조하여 체아직을 제수하려 하였다. 그 후 『大典續錄』에 향화인 자손의 체아직은 부사명 2명, 부사용 4명을 돌아가면서 제수하도록 규정하였다.⁸⁶⁾

79) 『세종실록』 권18, 4년 12월 계묘.

80) 『세종실록』 권67, 17년 1월 정해.

81) 『經國大典』 권3, 禮典 惠恤條.

82) 『세종실록』 권34, 8년 12월 임술.

83) 馬三甫老는 향화왜인으로 廣州戶長 李問의 양자가 되어 성을 李氏로 가칭하고 楊州戶長 韓原의 딸과 결혼하여 李根을 낳았다(『세종실록』 권67, 17년 1월 정해).

84) 『세조실록』 권21, 6년 9월 병술.

85) 『세종실록』 권85, 21년 5월 병자.

86) 한문종, 앞의 책, 83쪽 참조.

(7) 범법자의 처리

조선에서는 향화왜인과 그의 자손이 죄를 지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였을까? 먼저 향화왜인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 조선인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감옥에 가두고 판결을 기다리도록 하였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참형에 처하였다.⁸⁷⁾ 또한 범법자 중에서 禁物을 밀거래 한 자와 요술을 가지고 백성들을 현혹하고 재물을 편취한 자는 참형에 처했으며, 그 나머지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산간벽지로 귀양 보냈다.

그러나 향화인에 대한 법률 적용은 그리 엄격하지 못하였던 것 같다. 이는 1458년(세조 4)에 야인 薛衆巨가 참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는데, 그가 향화인이고 조선의 법을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용서하여 석방한 사례를 통해서 추정할 수 있다.⁸⁸⁾ 또한 향화인이기 때문에 죄를 감해준 사례는 많이 있었다. 즉 1446년에 향화야인 童山이 노상에서 활로 得春을 위협하여 재물과 말을 빼앗은 사건에 대해 향화인의 減罪律을 적용하여 杖 1백 대에 徒 3년의 형을 감하여 杖 80대만 집행하도록 하였다.⁸⁹⁾ 이 사례에서 보면 조선에서는 향화왜인에 대한 감죄율을 적용하여 조선의 백성보다는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감죄율은 향화인의 아들에게도 적용되었다.⁹⁰⁾

이와 같이 향화인에 대해서는 조선의 법률에 따라서 범죄자를 처벌하였다. 이는 그들을 조선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한 이상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다만 향화인의 처벌을 법률의 규정보다는 가볍게 한 것은 향화인에 대한 무효책의 일환이었다.

V. 맺음말

조선초기 향화왜인의 발생배경은 조선의 왜구대책과 토지나 식량의 부족으로 인한 생활고 때문이었다. 특히 조선초기의 향화왜인은 왜구로서 투항한 향왜가 많았다. 이는 조선의 왜구대책에 따라 왜구가 평화적인 통교자로 변질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 후 향화왜인은 생활고 때문에 스스로 향화한 자, 대마도주가 파견하거나 도주의 허락을 받은 자, 대마도정벌 시에 억류되거나 포로로 붙잡혀 온 자, 피로인이나 표류인을 송환해 온 자, 조선의 사절과 동행하여 온 자, 왜승, 三浦에 거주하는 恒居倭人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갔다. 한편, 1444년(세종 26) 이후에는 일본에 거주하는 왜인에게도 관직을 제수함에 따라 향화왜인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조선에서는 향화왜인을 경상도와 전라도 해안에 분치하였으나 그들이 집단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변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의 산간지방에 분치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였다. 또한 향화왜인의 外方 출입을 금지

87) 『세종실록』 권5, 1년 8월 계미, 을유.

88) 『세조실록』 권13, 4년 7월 경인.

89) 『세종실록』 권114, 28년 11월 갑신.

90) 1435년에 향화 수직왜인 平原海의 아들 平順이 뜸을 잘못 떠 薛順이 죽자 平順의 죄는 참형에 해당되지만 향화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杖刑 1백대를 贖으로 바치게 하였다. 『세종실록』 권70, 17년 10월 기미.

하고 사적인 왕래 및 통신을 금지하였다. 한편 대마도정벌 이후 병조에서 拘留倭人이나 포로를 倭案에 置籍하여 관리하면서 쇄환 시에 근거로 활용하였다. 그 후 『경국대전』의 편찬시기에 이르러서는 예조에서 향화왜인을 向化案에 치적하여 관리하고 병조에서 향화인에 대한 포폄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에서는 예조와 병조로 하여금 향화인을 이중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였다.

조선초기 향화왜인에 대한 기본정책은 가는 자는 막지 않고 오는 자는 거절하지 않는 것이었다. 따라서 향화왜인 중에는 향화 후에 조선에 그대로 거주하는 자도 있었지만 본토에 돌아가는 자도 있었다. 그러나 向化僧 信玉과 雪明처럼 수년 동안 전국의 각지를 유람하여 산천의 형세와 허실을 모두 알고 있는 자들은 정보의 유출을 우려해서 돌려보내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조선에서는 관직을 제수받지 못한 일반 향화왜인을 각 지방에 분치하여 식량과 토지, 의복, 집 등을 하사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조선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田租, 賦役, 軍役을 면제해주었다. 반면에 향화왜인 중에서 왜구의 우두머리나 왜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 의술·제련술·조선술 등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벼슬을 주고 서울에서 거주하게 하였다. 이들은 관직에 상응하는 녹봉과 月料, 의복, 집, 노비 등을 지급받았으며, 본인이나 가족이 죽었을 경우에 致祭와 賻儀를 받았다. 또한 향화 수직왜인의 일부는 성씨와 이름, 관향을 하사받았다.

한편 조선에서는 향화인이나 그의 자손에게 문·무과의 응시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향화인은 과거보다는 취재나 체아직을 통해서 관직에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또한 향화인은 조선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는 조선의 법률에 따라서 처벌하였지만 減罪律을 적용하여 법률에 의한 규정보다는 가볍게 처벌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에서는 향화왜인이 조선의 사회에 빨리 적응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다양한 대책을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직을 제수받지 못한 향화왜인은 물론이고 관직을 제수 받았거나 성명과 본관을 하사받은 향화왜인조차도 그들의 후손들이 어디에 어떻게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사료가 없어서 정확한 실상을 파악할 수 없다. 다만 향화왜인과 그의 후손들의 생활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는 平道全과 皮尙宜 등 극소수밖에 없다. 平道全은 향화 이후 왜구의 토벌에 참여하고 대일 외교사절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1419년 5월에 충청도 비인현에 침입한 왜구를 토벌할 때 힘써 싸우지 않고 왜적 중에 자기가 아는 왜승을 죽이지 말라고 부탁한 사실이 드러나 그의 가족과 함께 평양에 유배되었다가 후에 평안도 양덕에서 일생을 마쳤다.⁹¹⁾ 향화왜인 皮沙古의 아들인 皮尙宜는 조선의 향화왜인 우대책에 따라 취재나 체아직을 통해서 관직에 진출한 후 대일 외교사절로 활동하였으며, 靖難原從功臣 3등에 녹훈되고 東萊를 본관으로 하사받았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은 전혀 알 수 없다.⁹²⁾

이러한 점에서 보면 향화왜인과 그의 후손들이 조선의 사회에 정착하여 생활하지 못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료가 거의 없어서 정확한 실상을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향화왜인과 그의 후손들이 조선의 사회에 정착하여 생활하지 못하였던 이유를 간략하게 추론하는데 그치고자 한다.

91) 한문중, 앞의 논문, 2016, 21~22쪽 참조.

92) 한문중, 앞의 논문, 2015, 89~91쪽 참조.

첫째, 향화왜인은 대마도 출신이 많았기 때문에 어로나 상업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농사에는 익숙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조선에서는 관직을 제수받지 못한 향화왜인에게 식량과 토지, 의복, 집 등을 하사하고, 일정기간 동안 田租, 賦役, 軍役을 면제해주었음에도 그들의 조선 정착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일본과 조선의 언어 및 문화, 풍습 등의 차이를 들 수 있다. 향화왜인은 조선말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조선의 지방민들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향화왜인은 武를 숭상하였지만 조선에서는 성리학적 정치이념에 따라 충과 효를 중요하였으며, 文을 숭상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향화왜인이 조선에서 살아가는데 커다란 장애물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임진왜란으로 계기로 조선에서는 일본을 ‘不具戴天의 원수’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향화왜인들은 자신의 조상이 일본인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임진왜란 때 조선에 투항한 항왜의 수가 약 5천명에서 1만명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항왜의 후손으로서 오늘날까지 명맥을 이어 온 것은 沙也可 金忠善의 가문밖에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⁹³⁾

넷째, 조선중기 이후 족보가 보급되고 동족마을이 형성되면서 자기 가문과 가계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어 갔다. 이에 따라 향화왜인은 자신의 출신을 감추고 살아가거나 다른 집안의 족보에 편입되어 자취를 감추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 | | |
|-----------------|--------------|
| 『조선왕조실록』(태조~성종) | 『海東諸國記』(신숙주) |
| 『經國大典』 | 『大典續錄』 |
| 『大典後續錄』 | 『唐令拾遺』 |

저술

- 羅鍾宇, 「韓國中世對日交涉史研究」,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1992.
 張學根, 『朝鮮時代 海洋防衛史』, 創美社, 1987.
 河宇鳳, 「朝鮮前期의 對日關係」, 『講座韓日關係史』, 玄音社, 1994.
 한문종, 『조선전기 향화 수직왜인 연구』, 국학자료원, 2001.

논문

- 김문자, 「임란 시 항왜 문제」,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93) 임진왜란 시의 降倭將 沙也可 金忠善에 대해서는 한문종, 앞의 논문(2006)에 잘 정리되어 있다.

- 李章熙, 「壬亂時 投降倭兵에 대하여」, 『한국사연구』 6, 한국사연구회, 1971.
- 제장명, 「임진왜란 시기 향왜의 유치와 활용」, 『역사와 세계』 32, 효원사학회, 2007.
- 한문중, 「朝鮮前期 對日外交政策 研究 - 對馬島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1996.
- 한문중, 「임진왜란 시의 降倭將 金忠善과 『慕夏堂文集』」, 『한일관계사연구』 24, 2006.
- 한문중, 「조선초기 향화왜인 皮尙宜의 대일교섭 활동」, 『한일관계사연구』 51, 2015.
- 한문중, 「조선초기 대마도의 향화왜인 平道全」, 『군사연구』 141, 2016.

* 이 논문은 2017년 5월 26일에 투고되어,
2017년 6월 22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6년 7월 8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6년 7월 13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 Abstract |

The Naturalization and Settlement of the Japanese in the Early Joseon Dynasty

Han, Moonjong*

The naturalization of the Japanese in the early Joseon dynasty occurred from some counter plans of the government for Japanese pirates or their hard living such as the shortage of land and foods. Especially there were many surrendered pirates among the naturalized Japanese in the early times. Afterwards Japanese naturalization was expanded to the detained, captives, the naturalized of one's own accord because of difficult living conditions, envoys from Tsushima, escorts to dispatch drifters, monks, and the Japanese residing in the three ports. However, since 1444, the number of the naturalized Japanese had decreased sharply due to the fact that, the Joseon government began to give office to the people living in Japan.

In order to prevent the grouping of the naturalized Japanese, the government forced them to divide into inland mountains far away from the beach to prepare for emergencies. Joseon also prohibited the Japanese from going outside and prevented them from traveling and communicating privately.

In the early Joseon period, the basic policy of the government for the naturalized Japanese was not to stop them going or not to refuse to come. Therefore, some of the local residents returned to Japan. However, because of the leak of information, the government did not return those who knew the status and reality of the mountain by visiting various parts of the country for many years, such as the naturalized monks Shinok and Solmyong.

The Joseon government distributed the naturalized Japanese, who did not receive the government's office, to each province, and gave them food, land, clothing, and houses. And they were exempted from taxation, compulsory labor, and military service for a certain period so that they could settle quickly in Joseon. On the other hand, some Japanese received preferential treatment from the government. The people who had been a head of Japanese pirates or had the skills of medicine, smelting, etc., got official positions from the government and were allowed to reside in Seoul. And they were given salaries, clothes, houses, and slaves, corresponding to their

* Professor, Chonbuk National University

offices, and some received their surnames, names, and places of origin. And the naturalized Japanese who committed the crime were punished according to the laws of the Joseon Dynasty, but lightly penalized by applying the decrees decreasing punishment.

Despite the preferential treatment of the government, it seems that the naturalized Japanese and their descendants could not settle down in the Joseon society. The reasons can be estimated as follows. First, the Japanese were interested in fishing or commerce because many of them were from Tsushima Island, but were not accustomed to farming. The second is the difference in language, culture and customs between Japan and Korea. Third, Joseon people regarded Japan as a deadly enemy after the Japanese invasion in 1592. Fourth, as the genealogy began to spread widely after the middle of Joseon Dynasty and the consanguineous villages were formed, the perception of lineage and clan was expanded.

Because of this background, it is presumed that the naturalized Japanese could not adapt well to the society of Joseon, or they would have lived with their identity hidden.

[Key Words] Naturalized Japanese, Japanese pirates, Japanese with government positions, Tsushima Island, Pi Sangeu

